

2023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2차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지원규모(2차) : 10억원, 67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9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공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28.(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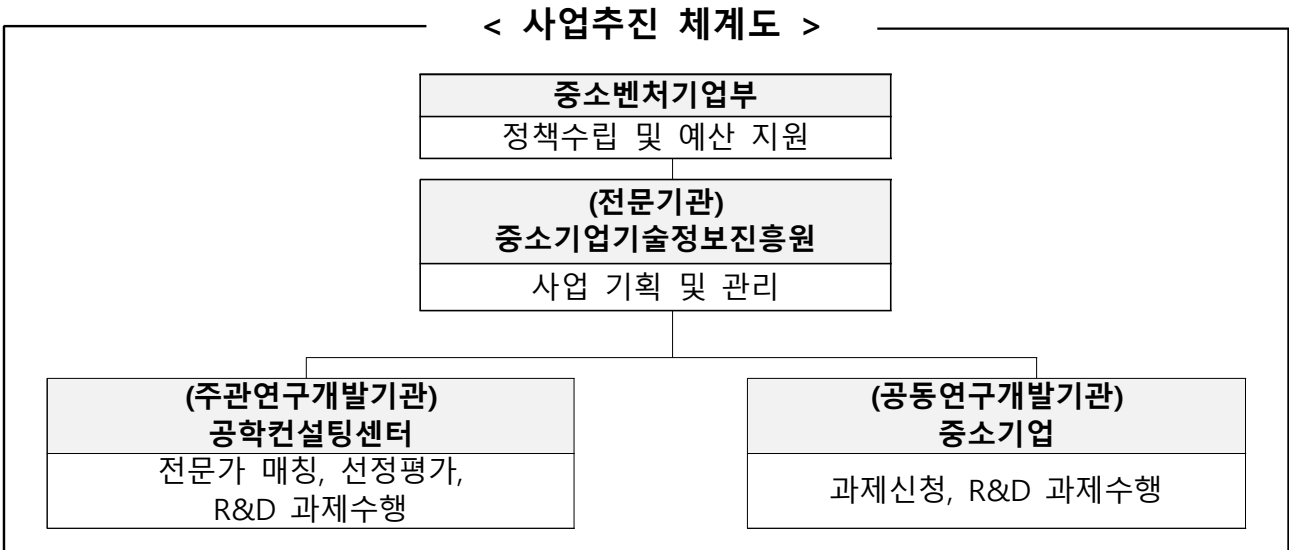
- * 접수 기간 : (해결의뢰서) 2023. 5. 25.(목) ~ 2023. 6. 7.(수) 18:00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접수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2023. 6. 8.(목) ~ 2023. 6. 28.(수) 18:00까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0억원, 167개 과제 지원('23년 전체 신규과제)

< '23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지원예산	공고시기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차	100	30억 원	'22. 1월
	2차	67	10억 원	'22. 5월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9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75%→8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 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56) 또는 국번없이 1357)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최대 9개월, 3천만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5,000	500	3,250	3,750	18,750
2차년도	15,000	500	3,250	3,750	18,750
합계	30,000	1,000	6,500	7,500	37,50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7	17.3	20	100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

□ 기술료 징수기준 : 본 사업은 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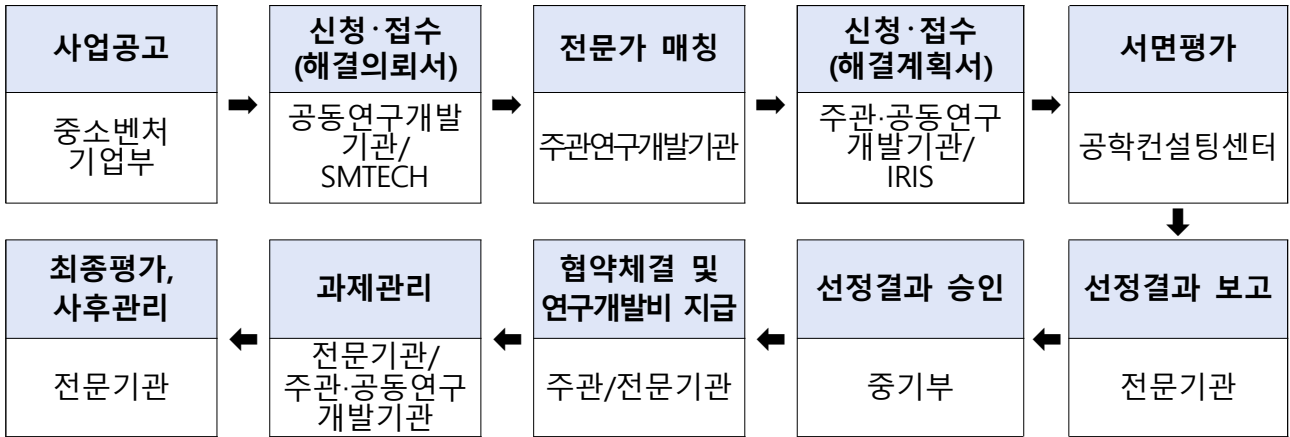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공학컨설팅센터 단위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목표 R&D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추천대상으로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서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사항은 붙임의 "가·감점 항목 및 확인 방법" 확인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20
	기술애로 해결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20
	기술전문가 구성 및 역량	10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5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파급효과	R&D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20
자금집행계획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점수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28.(수)
- 접수기간

구분	신청기간
해결의뢰서 제출	2023. 5. 25.(목) ~ 2023. 6. 7.(수) 18:00까지 * SMTECH를 통한 의뢰서 접수
기술전문가 매칭 및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제출	2023. 6. 8.(목) ~ 2023. 6. 28.(수) 18:00까지 * IRIS를 통한 계획서 접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 ☞ 신청방법(해결의뢰서)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맞춤형 기술파트너 신청(기술애로 해결의뢰서) → 전문가 매칭(공학건설팅센터) → 일반과제 신청(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방법(해결계획서)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 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SMTECH(www.smtech.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해결의뢰서** 직접입력
 - SMTECH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1장 분량의 '기술애로 해결의뢰서'를 직접 입력
- ③ 3단계 : '전문가 매칭' 후 신청기업 및 공학센터의 온라인 신청(해결계획서)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④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2차 시행계획 공고
- ⑤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신청 시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8. 3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③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	
④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7.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당해연도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7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 동사업 기지원 횟수 3회 이상 기업이 신청 시 지원 제외
- ③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④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3책 5공 적용 예외)
 -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⑤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⑦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항의 보안과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유의사항, 협약체결 관련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877-2041
공학컨설팅센터	각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전문가 매칭,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공학컨설팅센터 문의처 참조

□ 공학컨설팅센터 문의처

순번	권역	공학컨설팅센터명	전화
1	서울·경인·강원	인천대학교	032-835-9764
2		한성대학교	02-760-5565, 5538
3		가천대학교	031-724-4523, 4521
4	대구·경북	금오공과대학교	054-478-6677
5		대구대학교	053-850-5594
6	부산·울산·경남	창원대학교	055-213-2957, 2918
7	호남·제주	전북대학교	063-270-3656, 063-219-5399
8		조선대학교	062-230-6330, 6331
9	대전·충청	한밭대학교	042-821-1898

☞ 광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가점에 대한 인정은 과제 접수 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